

의안번호	2213376
의 퇴 인	조지연의원
회 답 일	2025. 12. 15.
추계번호	25B5523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7조제3항(기후 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) 신설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함(제3항 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70조(기금의 용도)	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 3.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<u>기후위기 취약계층</u> 에 대한 일자리 전환·창출 및 피해보상 지원	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및 미실시 근거 규정
1	안 제47조제3항(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)	·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0조(기금의 용도)	

2. 상세 사유

가.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 지원 등 (안 제47조제3항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¹⁾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에 노력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) 2. “기후위기 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계층, 야외노동자, 농어업 종사자,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·경제적·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
-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재해 질병, 상해 시 진단비 등을 정액 지급하고,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하여 진단비 및 입원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5년 기준 27억 8,000만원임 ([참고자료 1] 참조)
- 한편,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에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고,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였으며, 2026년에는 기후보험체계 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연구를 위한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음

[표 1] 기후보험 도입방안 마련 연구용역 관련 현황

용역명	수행기간	수행기관	계약금액
기후보험 도입방안 마련 연구	2025.4.14.~10.10	한국리스크관리학회	4,970만원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[표 2] 2026년 기후보험 관련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기금·회계명	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2026
기후대응기금	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(6331-301)	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(기후보험체계 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연구)	300

자료: 기획재정부

- 다만,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와 그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으며, 현시점에서 기후보험의 종류, 가입대상과 보장범위, 보험료의 산정, 정부의 보험료 지원 여부 및 지원률·지원액 등 기후보험의 설계와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나. 기금의 용도(안 제70조)

-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‘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’을 추가하는 내용임
- 현행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은 정부의 출연금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(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), 다른 회계 및 기

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²⁾,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, 적응 기간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등의 용도에 사용함³⁾

[표 3] 2026년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2024 결산	2025 ¹⁾		2026 예산안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	B-A	(B-A)/A
기후대응기금	2,305,830	2,621,717	2,599,717	2,905,685	305,968	11.8

주: 1)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:기획재정위원회」, 예산안분석시리즈 IV, 2025.10.

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 중으로([참고자료 2] 참조), 개정안이 시행되어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이 추가될

- 2) 제69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정부의 출연금
 2.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
 3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 4.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 5.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·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
 6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(豫受金)
 7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
 8.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
 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·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제71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에 따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.
- 3) 제70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1.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·운영
 2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·노동·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
 3.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,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
 4.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·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·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·창출 지원
 5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
 6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·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
 7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·홍보
 8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
 9.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 10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
 11. 기금의 조성·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 12.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

경우 이와 관련된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여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 개요 및 현황

(경기도 제출자료)

□ 추진배경

- 기후변화에 따른 도민 건강피해 구제와 취약계층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기후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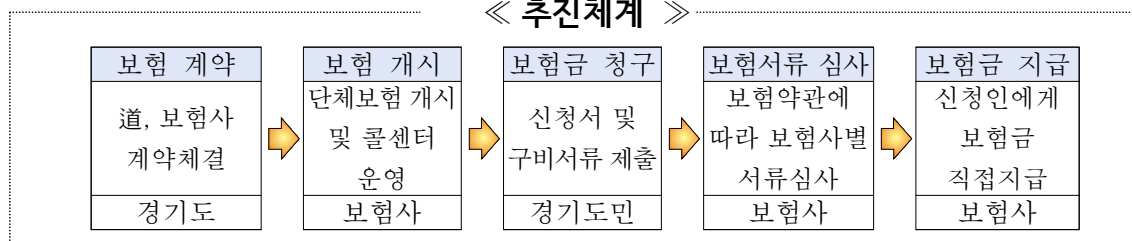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- (지원대상) 전 도민(자동가입) - 단, 기후위기 취약계층 추가지원(보장내용 차등)
 - ※ 도민: 14,387,264명(등록외국인 등 포함) / 기후취약계층: 153,003명(방문관리사업 대상)
- (사업내용) 전국 최초,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보험(정책·정책보험) 지원
-

- ① (경기도민) 기후재해 질병(온열·한랭질환, 감염병), 상해 시 진단비 등 정책 지급
- ② (취약계층) 진단비+입원비, 교통비, 이후송비, 정신적 피해 등 추가지원

- (사업기간) 2025. 4. 11. ~ 2026. 4. 10.(1년단위 보험계약)
- (사업예산) 27.8억원(보험료 26.6억원, 홍보비 1.2억원)
 - * 본예산 34억원→ 2회추경 시 보험료 낙찰차액(6.2억원) 감액
- (추진체계)

《 추진체계 》



《 보험금 지급현황 ('25.12.3. 기준) 》

- 총 41,645건, 보험금 911,100천원 지급

□ 기대효과

- 도민, 특히 기후위험 대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두터운 지원으로 기후격차 해소
- 예측불가능한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으로 기후안전망 구축

□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

구분	보장항목	보장내용	보장금액
경기 도민	온열질환 진단비 (T67)	보험기간내 온열질환 진단 시 보장 *연 1회 제한	10만원
	한랭질환 진단비 (T33,T34,T35,T68,T69)	보험기간내 한랭질환 진단 시 보장 *연 1회 제한	10만원
	감염병 진단비 (뎡기열, 웨스트나일열, 쯔쯔가무시, 라임병, 말라리아, 일본뇌염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, 비브리오패혈증)	보험기간내 해당 감염병 진단 시 보장 *사고당	10만원
	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(기상특보, 자연재해 관련)	보험기간내 기후에 따른 상해 4주 이상 진단 시 보장 *사고당	30만원
기후 취약 계층	온열질환 입원(일당) (T67)	보험기간내 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*사고당(입원당)	10만원 (5일 한도)
	한랭질환 입원(일당) (T33,T34,T35,T68,T69)	보험기간내 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*사고당(입원당)	10만원 (5일 한도)
	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(기상특보, 자연재해 관련)	보험기간내 기후에 따른 상해 2주 이상 진단 시 보장 *사고당	30만원
	의료기관 교통비 (기상특보 시)	보험기간내 의료기관 진료차 방문 시 교통비 보장 *인당 10회 제한	2만원
	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(기상특보, 자연재해 관련)	보험기간내 기후에 따른 피해로 의료기관 이송시 사설이송업체 이송 지원 *사고당	50만원
	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 (기상특보, 자연재해 관련)	보험기간내 기후에 따른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 센터 이용시 비용 보장 *인당 5회 제한	10만원

[참고자료 2] 2025년 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사업 개요

(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)

□ 사업 개요

- **(사업목적)** 취약계층 및 지역에 적합한 지원사업 유형을 적용한 적응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기후 탄력성 증대
- **(사업근거)** 「탄소중립기본법」 제38조, 제3차('21~'25)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
- **(사업유형)** 지자체 자본보조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**(사업비)** 총 190억원(국비 95억원, 지방비 95억원)
 - * 국비 100억원(보조사업 95억원, 컨설팅 및 가이드 마련 등 5억원)
- **(사업기간)** '25년 (* '21~, 1년, 단년도 집행)
- **(사업계획)** '25년도 지원방안 마련 및 공모지침안 확정('24.1~6) ⇒ 지자체 공모('24.7~8) ⇒ 선정 평가('24.9~10) ⇒ 결과 통보('24.11) ➡ ('25) 사업설계 ⇒ 공사·준공 ⇒ 정산
- **(지원유형)** 폭염, 한파,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·지역의 기후탄력성 확보를 위해 6개 사업유형 모델 제시

□ '25년도 지원사업 유형

번호	사업유형명	세부내용	지원대상
1	취약가구·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	▶ 폭염대응 실내 열환경 개선 • 건물 옥상·지붕·외벽에 차열페인트 도장	개별 취약가구, 취약계층 이용시설
2	결빙 취약지 개선사업	▶ 폭설·한파 취약지 결빙 방지사업 • 경사진 골목길, 계단 등 취약지역 보행로·이면도로에 열선, 발열섬유 등 시공	취약계층 밀집지 내 결빙 취약지
3	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	▶ 폭염 쉼터 조성사업 • 그늘조성, 녹지·식재 조성, 차열페인트도장(시설·장비표면), 쿨링설비(물입자 분사시설 등), 음수시설, 자연통풍 형성, 기존시설·구조물 재배치 등 복합 적용	취약계층 밀집지 내 어린이놀이터, 공원, 광장 등
4	녹색공간 조성사업	▶ 건물 녹화조성 • 옥상녹화, 벽면녹화(부착식), 그린커튼 등 3종	공공성을 갖춘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

번호	사업유형명		세부내용	지원대상
5	야외 근로자 컴퓨터 설치사업	농촌형 쉼터(에너지자립형) 설치사업	▶ 폭염·한파 대응 농촌형 쉼터(에너지자립형) • 대규모 농경단지 내 길이 6m × 폭 2.6~3m × 높이 2.4~3m 규격의 휴게시설 설치(접근성 및 편의성 고려) • 신재생에너지*를 통한 에너지 자립 * 태양광 발전의 경우 약 3kW 설비용량	야외 농업근로자
		야외 공공 근로자 쉼터 설치사업	▶ 폭염·한파 대응 쉼터(고정형) • 고정형 쉼터로 정수물품 배정 불필요 • 인근 전력망 연결을 통한 전력공급 가능 • 신재생에너지*를 통한 에너지 자립 * 태양광 발전의 경우 약 3kW 설비용량	공원 등 한정된 공간범위 내 야외 공공근로자
		야외 공공 근로자 이동식 쉼터 설치사업	▶ 폭염·한파 대응 이동식 쉼터(도로주행형) • 차량용 트레일러 구조물(차량 정수 배정 필수) •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연계 활용	이동이 필요한 야외 공공근로자
6	소규모 사업장 주변지역 적응인프라 조성사업		▶ 공장-주거 혼재 지역에 적응시설 복합 조성 • (환경오염·폭우) 그린인프라·LID사업(녹지·식생, 침투·저류 등), 생태복원(훼손지, 유수지 등), 기타시설 등 복합 적용 • (주거개선) 차열페인트 시공, 녹화 등 복합 적용 • (폭염·한파) 마을주민·근로자 이용 쉼터 조성(늘이터 등), 마을 내부·주변부 녹지·식생 조성, 결빙취약지 개선 등 • (물순환) 생태보행로(녹지대+빗물저류), 식생수로 조성	개별입지 공장 집약지 내 공장-주거 혼재지 또는 노후산업/공업단지와 주거지 인접지역
지자체 제안			▶ 문제해결을 위한 신규사업·기술 발굴·제시 ※ 타 사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은 제안대상에서 제외	—